



본란의 기사는 本會의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本會 國際部 (TEL : 553-0941/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EC通商情報

가. 諮問委員会 VCR 케이스 價格 引上 (Price Undertaking) 案

- (1) 많은 비공식 토의 및 내부 검토끝에 執行委 VCR 常任 担当官인(Mr. Welge)는 VCR輸出業体 3 個社가 제의한 UT案을 '89年 1月 6日 反덤핑 諮問委員会에 제출.
- (2) 執行委가 합의한 절차에 따르면 諮問委員会의 회원들은 제출된 UT案을 검토후 그들의 의견을 '89年 1月 13日까지 執行委에 전달해야 하며 執行委는 이후 며칠간 諮問委의 의견을 검토한 후 UT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執行委의 결정은 조만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
- (3) 한편 諮問委 委員中 西独 代表는 本件 UT 수락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유지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代表들은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 그러나 일단은, UT에 대한 반대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짐.

나. 執行委 Video Tape케이스 UT支持

- (1) Video Tape케이스를 맡고 있는 2名의 담당관 (Mr. Wenig와 Mr. Nielson)은 韓国 輸出業体의 價格引上 제의를 지지할 것임을 비공식으로 표명. (홍콩에 대해서는 반대)
- (2) 韓국의 수출업체는 가격인상안을 제안하지는 않았지만 수출업체들은 가격인상 제의 등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執行委側에 이미 통보했으며 執行委는 관련회사들에게 가급적이면 자체 없이 UT를 제출해 줄 것을 통보.

- (3) 執行委는 일단 최저가격 메카니즘(a floor price mechanism)이 가장 적당한 UT案이라고 시사하였으며 執行委는 EC 제소업체를 대표하는 CEFIC이 UT를 반대할 것이며 아마도 諮問委에 로비를 해서 執行委가 UT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어 이에 따라서 執行委는 CEFIC이 UT가 제안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이전에 UT草案을 검토할 기회를 갖기 원하고 있음.
- (4) 본회 변호사인 前 CEFIC 高位 官吏와의 비공식 접촉결과는 CEFIC이 反덤핑 절차에 있어서 EC 덤프法이 규정한 절차 이외의 기타 다른 형태의 解決方式(VRA 등)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음. CEFIC은 反덤핑 절차는 준수되어야 하고 여하한 해결 방안도 수출業者와 執行委 사이에서 토의되어야 한다고主張. 反덤핑 케이스에 있어서 VRA의 수락에 많은 法的, 政治的 제약이 있음을 이미 VCR케이스에서 입증된 바 있다는 点을 상기해야 할 것임.

다. 執行委 Audio Tape 덤프 調査 開始

- (1) '89年 1月 14日에 執行委는 韓国, 日本, 홍콩 産 오디오 카세트·테이프와 오디오 릴 테이프에 대해 反덤핑 조사를 시작.
- 本件은 모든 EC内 상기 물품 생산업체를 대표하는 CEFIC에 의해 提訴되었는데 本提訴는 上記 3 개국으로부터의 輸入이 1984年부터 1987年까지 23%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동안 이 輸出品의 市場 占有率이 65%에서 71%로 증가되었다고 주장.

- (2) 提訴者は 또한 同輸入品 판매가격이 EC産 생산 품의 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으며 이것은 따라서 EC 産業의 利潤, 生産, 生産施設 可動率의 저하를 가져왔다고 주장.
- (3) 提訴는 특히 韓國의 수출 Capacity의 증가는 앞으로 EC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의 위협이 된다고 주장.
- (4) 執行委는 生산비를 포함하여 韓國 및 EC内 판매가격에 대한 세부내역을 묻는 질의서를 관련된 韓國의 輸出業者에게 보내게 될 것이며 질의서를 받지 못한 수출업자들은 執行委側에 통보하여 이 조사에 포함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執行委 조사대상에 빠져있는 수출업체들에게는 자동적으로 결정될 反덤핑 関税率中 최고율의 関稅가 부과될 것임.

라. 日本産 プリンタ에 関稅賦課 확대

- (1) 日本産 Dot matrix computer printer에 대한 확정 反덤핑 関稅 부과(1988. 12)에 이어 COUNCIL은 또한 日本産 Daisy Wheel Computer Printer에 대해서도 확정 反덤핑 関稅를 부과.
참정 反덤핑 판정에서 조사에 협조한 회사들에 게는 12.4%의 関稅가 부과되었으며 기타 日本製品에 대해서는 43.2%의 関稅가 부과.
- (2) 確定判斷에서 조사에 협조한 두 회사에 대해서는 20% 以上的 덤플링 마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関稅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기타 日本産 Daisy wheel printer 수출품에 대해서는 참정 関稅率 보다는 상당히 낮은 23.5%의 関稅가 부과됨.

마. 執行委, 半導体에 新原產地 規定 제안

- (1) 執行委는 IC의 原產地 결정방법에 대한 일련의 규정을 제안중. 현재는 非EC 제조업체들이 정확히 그들의 IC가 EC에서 어떤 작업과정을 거쳐야 EC 原產地로 취급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불확실한 실정임. 일단 生產品이 EC 原產地로 규정되면 이 물품은 EC内 모든 會員 国内에서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関稅나 quota에 의해 제한되지 않음.

- (2) 이 新規定은 IC가 EC 原產地로 되기 위해서는 단순 조립보다는 diffusion이 EC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명기할 것임. 현재 대부분의 美國 및 日本 半導体 제조업체들은 Diffusion 공정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본국에서 시행하고 유럽에서는 수입된 Wafer로부터 완제품 Circuit를 단순 조립하고 있음.
이 規定은 결과적으로 主要 美國 및 日本 Chip 제조업자로 하여금 Diffusion 공정을 행할 수 있는 공장을 EC内에 건설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공장의 신설은 상당한 양의 투자를 要하게 될 것이 명확.
- (3) 이 新規定은 최근 몇년간 主要 유럽 電子会社들이 수행한 로비활동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음. 유럽 生產業체들은 이러한 規定들이 그들로 하여금 하락세에 있는 市場 占有率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 규정은 EC 내에서 Diffusion工程을 수행하여 Wafer를 低價金 国家에 輸出하여 조립한 後 半導体를 EC에 재수출하고 있는 회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임.
- (4) 이 規定은 또한 執行委로 하여금 EC内에서 조립된 電子製品에 사용된 IC의 原產地 결정 및 이에 따른 電子製品의 현지 部品 비율을 결정하는 작업을 단순화시키게 될 것임.

바. 유럽 電子産業, 체제 개편

- (1) 英国의 GEC社와 西獨의 Siemens社가 공동으로 英国 電子会社인 Plessey를 引受하기 위한 시도에 착수했다.
Plessey 引受權에 대한 결정은 수개월간 연장될 예정이며 결과야 어떻든 유럽 電子産業의 再編成을 유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
한편, 이탈리아 계열의 프랑스 半導体 제조업체인 SGS-Thomson은 英国 半導体 그룹인 Immos를 引受할 계획을 발표. 지난 12個月동안 SGS-Thomson社는 유럽內 事業을 광범위하게

합리화하였으며 현재 그 활동영역을 확장코자 하고 있음.

사. 執行委 홍콩 겨냥

(1) 홍콩 수출업자들은 그들의 对EC 輸出이 EC執行委에 의한 反덤핑 규제 조치의 타겟이 되고 있다고 그들의 政府에 탄원하고 있음.

지난 9個月 동안 홍콩產製品에 대한 反덤핑 調査 대상에는 셀룰러폰, Video Tape, 소형 CTV, Photo 앨범, Audio Cassette Tape 等이 포함되었음.

(2) 홍콩의 수출업체들은 홍콩이 전통적으로 英國의 식민지로서 EC로 부터 特別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최근 執行委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点에 특히 우려하고 있음.

2. 美国通商情報

가. 対美通信機器速報

USTR은 '89年 1月 23日 通信分野의 상무협상을 추구하게 될 「優先対象国家」를 밝혔다. 이 조치는 綜合貿易法의 새로운 통신조항에 의거 취해진 것이다. USTR이 밝힌 2개국은 韓国과 EEC이다.

관련조항에 따라 美国 政府는 上記 2개국과 2月 23日까지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 美国의 목표는 美国의 通信製品과 서비스를 위한 경쟁적 기회를 제공하는 협정을 마무리짓는 것이다.

이러한 協商은 1年안에 종료되어야 하나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증이 있다면 1年씩 2回 연장될 수 있다. 協商이 실패할 경우 보복조치를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새 綜合貿易法下에서 취해진 첫번째의 의미깊은 조치이다.

美国은 韓国과의 早期協商을 요구하기 위해 매우

신속히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나. CTV, CPT수입감시제 요청(ZENITH社 청원서 제출)

美國 CTV 제조업체 제니스(ZENITH)社에서 CTV 및 CPT 수입감시 청원서(316페이지)를 미 상무성에 제출.

- 대상국가: 멕시코, 말레이지아, 싱가폴, 홍콩, 중국, 태국, 필리핀
- 대상품목: CTV완제품 및 모든 CTV부품, CPT.
- 청원내용: 우회수출 방지.

일본, 한국, 대만의 CTV 제조회사들이 이 우회수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청원. 이는 CTV뿐 아니라 CPT를 포함하여

- (1) 분할선적한 제품(부품)을 미국에 서 조립하는 행위.
- (2) 제3국에서 생산한 반제품, 부품 등을 사용하여 미국내에서 CTV 완제품을 생산하는 행위.
- (3) 일본, 한국, 대만 등의 본국에서 생산한 반제품, 부품 등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CTV 완제품을 생산하는 행위.
- (4) TSUS의 관세분류표상에 반제품 수상기로 분류하여 CPT를 수입하는 행위.

이상의 우회방법을 통하여 우회 수출하는 CTV, CPT, 반제품, 부품 등의 미국내 수입에 대하여 감 시제를 취하도록 청원한 것임.

특히 멕시코 내에서 생산하는 한국산 CTV 경우 13" CTV는 23.24%의 마진과 19"CTV 경우는 77.05%의 마진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하여 덤핑혐의를 주장.